
세대공감,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재 정 국
[예 산 재 정 과]

목 차

I. 사업개요	3
II. 2026년 주요 변경 내용	4
III. 2025년 운영 성과	5
IV. 2026년 세부 운영계획	7
1. 시 단위, 읍면동 단위 사업 선정	7
2. 청년참여예산 사업 선정	8
3. 청소년참여예산 사업 선정	8
4. 읍면 주민숙원사업 선정	9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궐위원 모집	9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10
7. 주민참여 예산학교 확대 운영	12
8. 행정체제 개편(일반구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 개선 연구	12
9.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계획	13
V. 행정사항	13
[붙임1] 부적정 제안사업 판단 기준	15
[붙임2]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서식	17
[붙임3]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서식	18
[붙임4] 주민제안사업 검토 서식	19
[붙임5] 읍면동 공모사업 평가표	20

세대공감,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

- ☐ 청년·청소년참여예산과 주민투표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양질의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I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목적

-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기회 보장으로 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주민참여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필요 예산 반영

☐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 및 편성 규모

구분	市 단위	읍면동 단위	청년참여예산(신규)	청소년참여예산(신규)	읍면 주민숙원사업
대상 사업	여러 읍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본청(사업소 포함) 및 구청 소관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주민공동사업 등 읍면동 소관 사업	수혜 대상의 다수가 청년이거나, 청년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업 ※ 청년정책협의체 연계	청소년이 제안하고, 청소년 혜택을 위한 사업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 등 해당 지역 주민 다수혜택 사업
예산 액	사업당 최대 3억원 (한도 없음)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총 10억원 이내)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총 1억원 이내)	사업당 5백만원 ~3천만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읍: 6억 8천만원 -면: 6억 3천만원 (총 83억 9천만원)

☐ 추진현황

연도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제안건수	507건	507건	507건	473건	391건
편성건수	255건	256건	280건	241건	228건
편 성 액	94억원	136억원	135억원	115억원	95억원
편성 규모	市 단위	사업당 3억원	사업당 5억원		사업당 3억원
	읍면동 단위	읍면 1억원 동 2천만원	사업당 5천만원 (총액 10억원 이내)		
	숙원사업	읍 5억 8천만원 면 5억 3천만원	읍 6억 8천만원 면 6억 3천만원		

II

2026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청년·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신규)	○ 청년·청소년의 권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6년 신규 추진 ○ (청년참여예산사업) - 수혜 대상의 다수가 청년이거나, 청년 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위사업 5천만원 이하) 청년정책협의체 우선순위 결정 →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 - (단위사업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시 단위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 (청소년참여예산사업) - 관내 청소년의 제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 단위사업당 5백만원~3천만원 이하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선정
읍면동 단위 사업 주민투표 도입	○ 시 단위 사업: 위원회 선정 의결 ○ 읍면동 단위 사업: 운영위원 (50%), 분과위원(50%) 합산 점수 70점 이상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시 단위 사업: 위원회 선정 의결 ○ 읍면동 단위 사업: 운영위원(30%), 분과위원 (50%), 주민투표(20%) 합산 점수 70점 이상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주민투표 점수 환산법: ((해당 사업 득표수 / 전체 사업 중 1위 사업의 득표수)*100) * 20%
심의 절차 변경	○ 변경 전 사업부서 적격여부 검토 ↓ 분과위원회 적격심사 ↓ 운영위원회 적격심사 ↓ 운영(분과위원회) 최종 심의	○ 변경 후 사업부서 적격여부 검토 ↓ 운영위원회 적격심사 ↓ 운영(분과위원회) 최종 심의 ※ 2025년 성과 평가 토의 건의 반영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실시	○ 화성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 교육대상: 화성시민, 주민참여 예산위원 - 교육내용: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주민제안사업 심의 방법 등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202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 교육대상: 화성시민 -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등 ○ 화성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 교육대상: 화성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 교육내용: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주민제안사업 심의 방법 등
제안접수 시기 연장	○ 3월 말까지	○ 4월 말까지 제안접수 기간 연장
홈페이지 운영	○ 주민e참여, 주민참여예산방 홈페이지 동시 운영	○ 주민e참여로 홈페이지 시스템 일원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 확대	○ 차년도 주민제안사업 현장실사 1회	○ 차년도 주민제안사업 현장실사 2회 - 주민제안사업의 심도있는 심의 도모

Ⅲ

2025년 운영 성과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 총괄 현황

- 전년 대비 반영률은 증가했으나 제안 건수 및 편성 건수 감소
- 대규모 시설 사업(경로당) 제안 건수 감소에 따른 편성액 감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제안건수	473건	391건	△82건
편성건수	241건	228건	△13건
편성금액	115억원	95억원	△20억원
반영률	47.5%	58.3%	10.8% 증

○ 주민제안사업 선정 결과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합 계	제안건수	248건	183건	△65건
	편성건수	34건	35건	1건 증
	편성금액	31억원	11억원	△20억원
	반영률	13.7%	19.1%	5.4% 증
市단위	제안건수	177건	112건	△65건
	편성건수	16건	8건	△8건
	편성금액	27억원	4억원	△23억원
	반영률	9%	7%	△2%
읍면동 단위	제안건수	71건	71건	-
	편성건수	18건	27건	9건 증
	편성금액	4억원	7억원	3억원 증
	반영률	25.4%	38%	12.6% 증

○ 주민숙원사업 선정결과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제안건수	225건	208건	△17건
편성건수	207건	193건	△14건
편성금액	84억원	84억원	-
반영률	92%	92.8%	0.8% 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성인원) 4개 분과, 60명(남 36명, 여 24명)
- (회의실적)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운영 관련 회의 등

총계	총회	운영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계	기획행정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30회	2회	4회	24회	6회	6회	6회	6회

- (교육 및 성과평가) 역량 강화 교육(2회), 성과 평가 토의(1회)
- (포상) 우수 위원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1명), 화성시장 표창(9명)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 당해 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 (현장실사) 차년도 제안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구분			실시 횟수	참여위원	비고
합계			136회	82명	누적
2026년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29회	29명	위원회 실시
2025년도 추진사업 모니터링	반기별	상반기	19회	25명	
		하반기	20회	28명	
	분기별		68회	-	사업부서 실시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교육 추진 결과

구분	교육장소	차시(시간)	교육대상	교육내용	수료인원
온라인	경기도 평생 학습사이트 (GSEEK)	6차시(1h)	시민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사업유형,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등	424명
오프라인	화성시민대학 (2025. 3. 24.)	1차시(1h)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등	51명
	화성시민대학 (2025. 6. 25.)	3차시(3h)		· 위원의 역할 · 심의 방법 및 심의 실습 · 주민의견서 작성법 등	28명

IV

2026년 세부 운영계획

1. 시 단위, 읍면동 단위 사업 선정

□ 추진개요

- 접수기간: 2026. 2. 2.(월)~4. 30.(목) (집중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화성시 주민e참여 (<https://pb.lofin365.go.kr/HSCITY/main>)
 - (오프라인) 우편 및 읍면동 방문 접수
 - 신청자격: 화성시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직장인 및 학교의 재학생
 - 대상사업(시 단위, 읍면동 단위)
 -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사업
-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우선 검토

□ 추진계획

시기	~4월	5월	5월	6월	7~9월	11월
주요 내용	제안서 접수	사업단위 분류	제안사업 적격심사	사업검토	제안사업 심사, 최종의결(총회)	예산안 제출 (→의회)
주관	주민	예산재정과	사업부서, 운영위	사업부서	운영위, 분과위	예산재정과

2. 청년참여예산 사업 선정 [신규]

□ 추진개요

- 접수기간: 2026. 2. 2.(월)~4. 30.(목)
-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신청자격: 화성시민,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직장인 및 학교의 재학생
- 대상사업: 수혜 대상의 다수가 청년인 사업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편성규모: 사업당 최대 5천만원 (최대 1억원 이내)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청년예산 및 화성시청년정책협의체 제안사업은 시 단위 사업과 동일하게 검토

□ 추진계획

시기	2~4월	5월~6월	7~9월	9월
주요 내용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우선순위 검토	제안사업 심사	제안사업 확정
주관	시민	사업부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회	총회

3. 청소년참여예산 사업 선정 [신규]

□ 추진개요

○ 접수기간: 2026. 3. ~ 4.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속 기관을 통한 공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및 방문)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예산재정과 경제환경예산팀

○ 신청자격: 화성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

※ 개인 또는 팀(동아리) 단위 신청 가능

○ 대상사업: 청소년이 제안하는 지역 문제 해결 및 청소년 혜택을 위한 사업

□ 추진계획

시기	3~4월	5월~7월	8월	9월
주요 내용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심사	본 심사(경진대회)	제안사업 확정
주관	청소년	사업부서, 위원회	위원회, 제안 청소년	총회

※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 기준

-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다년도 사업, 국·도비 보조(매칭)사업
(법이나 조례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사업기간 2년 이상 사업, 대규모 SOC 사업 등)
- 타기관 사무 또는 행정 관청 설립 및 기능 보강 사업
(타 지자체 업무, 출장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의 신규 설립 및 리모델링 등)
-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제안된 사업, 1회성 축제성 행사, 기계획(추진중) 사업
(특정 사회단체의 사무실 및 상징물 조성, 사업비 증액 요구 사업 등)
- 단순 민원 또는 주민숙원성 사업
(농로 포장, 구거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마을방송 설치, 로고젝터 설치 등)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

4. 읍면 주민숙원사업 선정

□ 추진개요

- 대상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또는 지역민 다수가 수혜자인 사업
- 편성규모: 83억 9천만원 (※ 시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읍: 6억 8천만원(4읍), 면: 6억 3천만원(9면)

□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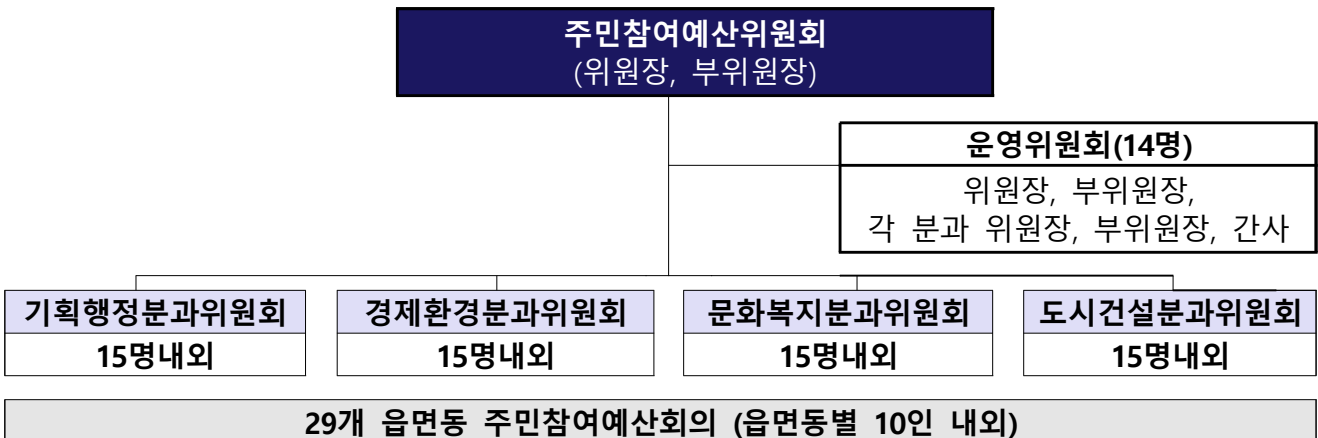
시기	~5월	5월	6월	7~9월
내용	제안서 제출 (읍면 소관팀)	⇨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 우선순위 결정	⇨ 최종 확정(총회)
주관	주민	읍면	읍면 주민참여예산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결위원 모집 [신규]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인원: 60명 (공개모집 31명, 추천 29명)
 -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임기: 2025. 3. 13.~2027. 3. 12.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예산제도 홍보 등

□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도



□ 보궐위원 위촉계획

○ 모집인원: 7명(결원 사유: 사임)

구분	우정	장안	정남	진안	병점1	동탄4	합계
소계	1	1	1	2	1	1	7
공개	0	0	0	1	1	1	3
추천	1	1	1	1	0	0	4

○ 임기: 전임 위원 of 남은 임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자격요건(기준: 공고일)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화성시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재직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자 등

※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서 임기만료 및 해촉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추진계획

2월	⇔	2월~3월	⇔	3월
공개 및 추천모집		선정 및 교육이수		위촉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

□ 회의 운영

○ 개최 횟수: 약 25회(총회 1회, 운영위원회 4회, 분과위원회별 5회)

구분	시기	주요내용	개최횟수
운영위원회	2026. 5.~12.	○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 총회 안건 상정	4회
분과위원회	2026. 7.~12.	○ 소관 분과 주민제안사업 심의	20회 (분과별 5회)
총회	2026. 9.	○ 주민참여예산사업 확정	1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2026. 6.	○ 읍면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 읍면동 단위 주민제안사업 검토	1~2회

□ 주민제안사업 환류 및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 점검계획

구분	추진시기	추진대상	추진내용	추진주체
서면 모니터링 (4회)	분기별 (1~4분기)	당해 연도 추진사업	○ 사업부서 대상 사업추진실적 점검 - 점검내용: 추진현황, 향후계획, 집행액 등	예산재정과, 사업부서
현장 모니터링 (2회)	반기별 (상/하반기)		○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점검내용: 제안자 의도 반영, 부서의 노력도 등	위원회
현장실사 (1회→2회)	7~8월	차년도 제안사업 대상지	○ 주민제안사업 필요성, 시급성,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모니터링) 사업 부서에 점검 의견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현장실사) 2027년도 주민제안사업 심의에 활용

□ 주민의견서 작성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 작성대상: 202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 작성주체: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추진계획

시기	9월	10월	10월	11월
내용	202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확정	⇒ 분과별 주민의견 작성	⇒ 주민의견서 최종 확정	⇒ 본예산안 첨부 및 의회 제출
주관	총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재정과

□ 위원회 활동 우수 위원 포상

○ 추천방법: 운영위원회 1명, 4개 분과별 1명 추천

○ 대상인원: 총 5명

○ 훈격: 화성시장

○ 자격요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에 2년 이상 적극 참여한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동일 훈격 이상 표창을 수상했거나 동일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받지 않은 자

7. 주민참여 예산학교 확대 운영

- 교육대상: 화성시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 교육기간
 - (온라인) 연중상시
 - (오프라인) 2026. 3.~4.(시민) / 2026. 6.(위원)
 - 교육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온라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 교육영상 게시를 통한 상시교육
 - (오프라인) ①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2026년 주민제안사업 선정)
②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내용
 - (온라인) 주민참여예산제 의의, 주민참여예산위원 역할, 주민제안서 작성 방법 등
 - (오프라인) 주민참여예산제 의의, 주민제안서 작성방법, 주민제안사업 심의 역량 강화
- ※ 위원 위촉 시 온라인 교육 필수 사전 이수 必

8. 행정체제 개편(일반구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 개선 연구 **[신규]**

- 목적: 행정체제 개편(4개 일반구 신설)에 따른 효율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모색
- 기간: 2026. 2.~5. (예정)
- 수행: 화성시연구원
- 주요내용
 - 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 일반 구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방안 모색 등
- 향후계획
 - 2026.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개선(안) 수립
 - 2026. 7.~11.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027. 1. 2027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27. 1.~3.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9.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계획

- 시정 홍보 매체 적극 활용 (홈페이지, SNS, 옥외 매체, 언론보도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배너 및 현수막 게시
- 각종 사회단체(통리장단, 주민자치회 등) 홍보 협조 요청
- 관내 아파트 홍보 협조 요청 등

V

행정사항

□ 전 부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참여 및 홍보
- 주민참여예산 편법 이용 금지(사전절차 회피, 내부 예산 확보 목적 등)

□ 소관 사업부서

- 시 단위 사업 적극 검토 및 구체적인 의견 제출
 - 제안자 의견 청취 및 현장 확인
 - 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등
- 위원회의 의견 청취 요청 시 부서 의견 설명(필요시 현장설명)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분기별 서면 제출)

□ 읍면동

-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및 접수 지원
- 주민제안사업 제안서 접수 및 주민 홍보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구성 및 회의 지원
- 읍면동 단위 사업 적극 검토 및 의견 제출
- 읍면 주민숙원사업
 -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 주민 숙원성 사업은 시·읍면동 단위 사업 부적격 대상임을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붙임 1. 부적정 제안 사업 판단 기준 1부.
2.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서식(오프라인) 1부.
3.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4. 주민제안사업 검토 서식 1부.
5. 읍면동 공모사업 평가표 1부. 끝.

부적정 제안 사업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4. 6.)

부적정 사업 판단 기준	부적정 사업 예시
1. 신규사업이 아닌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	▶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 연례적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사업 ▶ 사업비 증액요구 사업 ▶ 당해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예시 : 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 ▶ 자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시 :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설치 사업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 사업이 아닌 경우	▶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지정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단순생활 민원성의 사업(단순 생활민원사업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별도 관리 추진)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3.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 또는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 ▶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4.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경우	▶ 1회성 공연, 축제, 행사 등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 소규모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예 : 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도서관 등) ▶ 소규모 분산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사업(예 : 동일구간 예산의 분리편성 사업 등)
5. 선행절차 이행완료 및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한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선행절차 : 법 개정, 각종 영향평가, 투자심사, 재정계획 등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되는 경비나 사업(단, 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 별도의 심의제도(개별위원회 등)가 있거나 의회 또는 각종위원회 심의시 폐기된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6. 지역 파급효과가 미미하거나 다수 지역주민의 수혜가 불가능한 사업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안하는 사업	▶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이나 사업 ▶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일부지역에 경비지출 효과가 귀속되는 수혜성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성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 2027년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제안자 인적사항 (제안자가 불명확한 경우 검토 불가)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관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 ·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2년(예산편성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안구분 (☒ 체크)	☐ 시 단위 사업[본청(구) 추진사업]: 3억원 이하 사업 ☐ 읍면동 단위 사업(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사업): 5천만원 이하 사업 ☐ 청년참여예산(청년 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천만원 이하 사업 ※ 5천만원 초과 청년참여예산사업은 시 단위 사업으로 체크
사업명	예) 0000 사업, 0000 설치
사업위치	예) 도로명주소 혹은 지번
제안내용	☐ 사업 필요성 [제안이유, 기대효과] ☐ 사업 내용 [수혜대상, 사업내용, 추진방법, 사후관리 계획 등] ☐ 소요 사업비(추정) [사업량, 소요예산 등] ※ 필요 시 별첨자료 첨부
유의사항	☐ 부적격 사업 제안 지양 -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 다년도 사업, 일반민원성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 사유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필수 첨부 - 첨부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11월 중 홈페이지에 공고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주민e참여 홈페이지(https://pb.lofin365.go.kr/HSCITY/main) ☐ 현장접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4층 예산재정과(18274) ☎031-5189-6295

※ 2026. 4. 30.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202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 사업으로 활용됩니다.

【 2027년 예산편성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공동신청인(3인 이상 서명)				
소속:	성명:	(서명/인)	소속:	성명:
				(서명/인)
소속:	성명:	(서명/인)	소속:	성명:
				(서명/인)
※ 공동신청인 요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마을 대표성을 가진 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및 관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 이용 기간: 접수일로부터 2년(예산편성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업명	예) ○○리 ○○○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업위치	예) 도로명주소 혹은 지번
소요액(원)	예) 40,000,000원
숙원사업 신청내용	☐ 사업 필요성 ☐ 숙원사업 내용 ☐ 기대효과(사업의 효과)
2026년 월 일 OO읍 · 면장 귀하	

※ 신청서 접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제안사업 검토서 】

제안사업명																		
사업대상지	도로명주소 혹은 지번																	
사업규모	㎡, 개소, 명 등																	
소요예산	천 원	제안자 추정비용을 참고하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소요예산액을 기재																
산출근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산출근거</th> <th>예산액 (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합 계</td> </tr> <tr> <td>예시) 라벤더(꽃)</td> <td>2,000원 * 105개 * 19개소 * 2개 = 7,980,000원</td> <td>7,980</td> </tr> <tr> <td>예시) 대형화분</td> <td>200,000원 * 19개소 * 2개 = 7,600,000원</td> <td>7,600</td> </tr> <tr> <td>예시) 비료(25kg)</td> <td>200,000원 * 19개소 * 2개 = 7,600,000원</td> <td>7,600</td> </tr> </tbody> </table>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액 (천원)	합 계			예시) 라벤더(꽃)	2,000원 * 105개 * 19개소 * 2개 = 7,980,000원	7,980	예시) 대형화분	200,000원 * 19개소 * 2개 = 7,600,000원	7,600	예시) 비료(25kg)	200,000원 * 19개소 * 2개 = 7,600,000원	7,600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액 (천원)																
합 계																		
예시) 라벤더(꽃)	2,000원 * 105개 * 19개소 * 2개 = 7,980,000원	7,980																
예시) 대형화분	200,000원 * 19개소 * 2개 = 7,600,000원	7,600																
예시) 비료(25kg)	200,000원 * 19개소 * 2개 = 7,600,000원	7,600																
검토의견 (첨부자료 제출가능)	제안자 연락여부(연락 必)		현장확인 여부															
	여 / 부		여 / 부															
	○ ○ ○ 협의 필요한 타 부서명(혹은 타 기관명) : - 협의 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여 / 부 - 협의 내용: ※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신중 검토																	
사업의 타당성	택1(O 표시)																	
	적정 ()	중장기 검토 ()	추진 불가 ()	기 추진 ()														
검토부서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031-5189-															

사업명

□ 배점(총 50점)

항 목	배 점	검 토 사 항	배 점 구 분										점수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필요성	10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한 사업입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공성	10	•다수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시급성	5	•내년도에 바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까?	1	2	3	4	5	점수					
실행가능성	5	•기간 내 달성하여 실현이 가능합니까?											
예산적정성	5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돼 예산낭비가 없습니까?											
지역성	5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성장가능성	5	•주민의 일자리, 교육, 문화 측면 성장에 기여합니까? •장기간에 걸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타 분야에 적용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민친화성	5	•접근성이 좋은 사업입니까?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소계													
가점	2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거나,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0	1	2								
총 점													

※ 배점 방법 : 점수란에 V표시 및 점수 기입(미작성 시 최하점 간주), 총점 칸에 합계 점수 기재

※ 최종 점수는 위원 평가점수(80%)와 주민투표 득표율 환산 점수(20%)를 합산하여 산출

□ 종합(검토) 의견

○

○

※ 필요시 안전에 대한 의견, 심사 보완점 개선 건의 등 작성

평가자: (인)